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정부정책에 따른 보금자리론 요건 개편 및 유권해석 사례의 내규화를 통한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 담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이용 확인 강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주택을 주택보유수에 포함,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담보제공자의 범위에서 매도인 제외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6년 4월 27일(월) 09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금융처)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윤현기(smile@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566

붙임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